

고성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(의안번호 제466호)

심사 보고서

1998. 3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3. 13 | 고 성 군 수 |
| 나. 회부일자 : 1998. 3. 16 | |
| 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3. 16 |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 |

2. 제안이유

- 현행 고성군어린이집관리 및 운영조례증 상위법령 및 규정과 불일치한 것을 바로잡고 공립보육 시설로서의 공익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종사자에 대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하고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두게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- 가. 모자가정과 부자가정의 자녀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5조)
- 나.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을 시설장은 만 61세, 기타 종사자는 만 58세까지로 규정함.
(안 제12조의 2)
- 다. 종사자의 신규임용 연령 및 임기제한 규정을 마련함.(안 제12조의 3)
- 라. 종사자 연가일수를 근속기간에 따라 종전에는 3일내지 20일까지로 하던것을 앞으로는 4일내지 23일까지로 함.(안 제14조제1호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제57회 정기회시 충분히 검토·심의된 안건으로 시설장의 임기가 불합리하여 위원회에서 부결되어 보완된 안건으로.
-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의거 영유아의 입소범위 확대와 시설장과 종사자의 근무상한연령, 시설장의 임기제한, 신규임용연령 복무 등 상위규정과 불일치한 내용을 바로하고
-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육성을 위한 공립 보육시설로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조문을 개선·보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종사자의 연령, 복무 등 지방공무원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형평성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된다고 보는데
- 답 : 상부기관의 지침에 의거 개정하였습니다만, 점차적으로 보고·건의 등으로 자체실정에 맞도록 검토하여 개정조치 하겠음.

6. 토론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1998. 3. 1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